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3월 14일, 박충권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3월 1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26.) 상정/제안설명/검토
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6.02.12.) 상정/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 상정/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박충권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

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지원사업을 할 수 있고,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고, 지속적인 실험과 데이터 축적이 필수인 과학기술분야 연구업무의 특성상 육아 또는 돌봄기간 중에도 일정 부분 연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함.

이에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여,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을 보호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3조의2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대훈)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량으로 규정한 것을 강행규정으로 하고,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인데, 시행령상 지원사업과 개정안의 지원사업을 비교해보면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제 확대, 탄력근무제도 및 자녀 출산 지원사업 등이 추가되었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첫째, 2023년 기준 이공계 경력단절 여성이 16.8만명으로 이공계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과 같이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경우 지원사업을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특히 지속적인 실험이 필수적인 과학기술분야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육아와 연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탄력근무제도 지원사업을 추가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법률에 규정된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을 모두 실시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재량규정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최형두위원)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구체적 내용을 법률에 명시 하는 내용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법률에 규정된 사업을 모두 의무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의무규정을 재량규정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음.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체계·자구심사과정을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불임서류

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1부
2.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2.

제 안 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면 법률에 규정된 사업을 모두 실시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의무규정을 재량규정으로 수정하고, 기존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지원사업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한 점을 반영하여 대통령령 위임 조항을 정비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지원사업의”를 “지원사업의”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3조의2(경력단절 예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u><신설></u>	제13조의2(경력단절 예방 지원) ① ----- ----- ----- ----- ----- -----다 <u>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하여야 한다.</u> <u>1.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 지원사업</u> <u>2.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 지원사업</u> <u>3. 자녀의 출산·양육 및 가족구성원 돌봄 지원사</u>	제13조의2(경력단절 예방 지원) ① ----- ----- ----- ----- ----- ----- ----- <u>할 수 있다.</u> 1. ~ 5.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u>지원사업의 구체적 인 내용과 그 지원 사업의</u> 대상·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업</u> 4. <u>여성과학기술인</u> <u>의 일·생활 균</u> <u>형을 위한 조직</u> <u>·사회 문화 개</u> <u>선사업</u> 5. <u>그 밖에 여성과</u> <u>학기술인의 경력</u> <u>단절 예방을 위</u> <u>하여 과학기술정</u> <u>보통신부장관이</u> <u>필요하다고 인정</u> <u>하는 사업</u> ② (현행과 같음)	② ----- <u>지원사업의</u>----- ----- ----- -----.
--	---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지원사업을”을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지원사업의”를 “지원사업의”로 한다.

1.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 지원사업
2.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 지원사업
3. 자녀의 출산·양육 및 가족구성원 돌봄 지원사업
4. 여성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조직·사회 문화 개선사업
5.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2(경력단절 예방 지원)	제13조의2(경력단절 예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u>지원사업을</u> 할 수 있다.	① ----- ----- ----- ----- ----- <u>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u> <u>을</u> -----.
<u><신 설></u>	<u>1.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 지원사업</u>
<u><신 설></u>	<u>2.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 지원사업</u>
<u><신 설></u>	<u>3. 자녀의 출산·양육 및 가족구성원 돌봄 지원사업</u>
<u><신 설></u>	<u>4. 여성과학기술인의 일·생활균형을 위한 조직·사회 문화개선사업</u>
<u><신 설></u>	<u>5.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② 제1항에 따른 <u>지원사업의</u>	② ----- <u>지원사업의</u> -----

<u>구체적인 내용과 그 지원사업</u> 의 대상·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